

선수위원장 민원에 대한 사실 확인서

구분	제기내용	사실 확인 및 의견	비고
1. '16년 입사대의원 총회 개최관련	○대의원총회 통지 안건 내용과 다른 안건내용 심의	- 회의: '16.2.26, 대전역 '산천살' 개최 - 사무국장이 초안으로서 내용변경 가능성을 사전 설명하고 결재되지 않은 자료를 보내고(2.24), 이후 확정·완료된 공문을 보냄(2.26) - 총회 당시 통지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, 참가 대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안건이 상정되어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함. ※ 정관 제16조 제4항에 '총회 소집 등 인건통지는 7일전, 긴급한 경우 기간 단축 가능'으로 되어 있으나, 당일 배포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.	
	○대의원의 자격미달 대리인 참석 및 정관변경 시 재적대의원 2/3의 참석의 성원요건 미충족	- 재적대의원 15명 중 미자격자 2명을 포함하여 '정관변경' 정족수 2/3인 10명으로 개최하였으나, 대한 이의제기에 의하여 성원 미달로 정관 변경 무효 처리함. ※ 대리인은 부회장만 해당되나, 사무국장을 성원에 포함(서울 000 사무국장, 전북 000 사무국장) ※ '16.4.29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성원요건을 갖추어 의결 처리 - 이는 정관 제14조 제2항(대리인 자격), 제57조(정관변경 의결정족수)를 위반하여 엄정한 의결 기구 운영을 저해함.	
2. 전문체육위원회 구성관련	○'16.1.22. 협회장 본인 명의로 내부기안을 작성해 기안·결재 하여 구성	- 당시 사무국장(000)이 공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팀장(000)에게 실질적 기안을 지시하여 회장 명의의 기안 및 결재 처리 - *이는 협회 사무국 소수 편제를 감안, 회장 기안이 체계적이지는 않으나 이에 대한 규정상 제한은 없음. ※ 국가대표선발규정 내의 전문체육위원회 관련규정에 의하면 '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기맹단체장이 위촉한다.'로 규정함.	
	○'15년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선발한 국가대표 감독 임기보장 무시	- '15.10.6 강화위원회에서 심의하여 '000'을 감독으로 선임 의결하고, 관련 행정조치로서 내부품의 또는 채용계약서 없이 약 50일간 임무를 부여하였으나, 제도 변경(위원회 명칭변경 및 감독 자격요건 강화)과 관련하여 선임 감독을 선임함에 따라, 정당한 절차 없이 '16. 1월 경 000 감독을 자동 해임하는 결과를 초래함. ※ 000 감독을 '16년 항저우대회에서 리우패럴림픽 출전권 확보를 못할 시 경질한다는 내용으로 논의 하여 선임 의결	

구분	제기내용	사실 확인 및 의견	비고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당시 국가대표 선발 공고문에서 '훈련기간을 '15.11.2부터 '15.12.21까지로 하고 있고, 통상적으로 국가대표 선발은 1년 단위로 선임하는 바, '15년 선발된 감독이 '16년 3월까지 임기가 보장된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계약서 체결 및 감독 선임기간에 대한 명확한 행정행위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음. - 이후 강화위원회에서 전문체육위원회로 변경(감독 자격요건 강화)됨에 따라 재공고 후 신입 감독 선임(000 감독, '16.2.23자) 	
	○'15년 3차 이사회 결정사항 없이 전문체육위원회 구성 강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회의: '15.11.28, 대원전기교육원 세미나실 - 정관상 '전문체육위원회'에 대한 명칭변경 후 규정개정 및 구성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추정되나 - 협회 규정에 우선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상위 규정에 의한 긴급 제정이며, '16.4.29.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관의 관련조항을 변경함. 	
	○'16.2.3. 임시이사회에서 2차 임시전문체육위원회 구성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회의: '16.2.3,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인근 '만민향' 안간: 전문체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승인 등 - 이사회에서도 1인 내부품의 등 정상적 절차에 대한 우려를 하였으나, 사안의 시급성 및 그 외의 절차 준수를 인정하여 원안 통과됨. ※ 위 ★표의 회장 직접 내부결재구성에 대한 제기사항 참조 	
	○'16.2.20. 임시전문체육위원회 회의 및 이사회 개최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회의: '16.2.23, 협회 사무국에서 연석회의 진행 안건: '16년 국가대표 지도자, 선수 선임안 재심의 - '16년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 선발은 중국 항저우대회(리우 PG 출전권 획득) 참가를 위한 긴급사안으로 심의함. - 기 선임된 000 감독이 추천한 코칭스텝과 선발전 없이 시·도지부 추천을 받은 선수를 선발함. ※감독이 추천한 코치를 선발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, 선발규정 제14조①항에 명시된 '공개 선발전'을 거치지 않고 국가대표를 선발한 것은 규정위반에 해당 	
3.'16년 국가대표 선발 규정 위반	○'16년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관련 - 투명성·공정성을 위한 공개선발과 공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규정: 국가대표선발규정 제17조(국가대표지도자 선발방법 및 시기) -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감독 채용공고 실시('16.1.15자) - 중국 항저우대회(리우 PG 출전권 획득) 참가를 위한 긴급사안으로서 '16.2.23. 임시이사회에서 승인처리 - ◆이는 '15.11.28 제정된 국가대표선발규정에 '6개월 전 공고로 명시되어 있으나, 대한장애인 체육회(교육훈련부)의 한시적 지침으로서 '2017년 부터 적용'하는 것으로 문서 시행 및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기에 협회의 잘못은 없음. ※협회는 '16.1.15 공고를 하였음. 	

구분	제기내용	사실 확인 및 의견	비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응시자의 제출서류 검증 및 확인 절차 없이 처리결정 (면접 당일 제출) - 국외서류 진위여부 미확인 및 본인 해석에 의한 제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000 응시자의 중국 지도자 경력은 전문체육 위원회에서 중국 현지에 전화를 통하여 확인함. - 국제경력증명서(중국어 원본)는 필요 시 공증하기로 하였고, 해당 증명서에 대해 발급기관(중국상해 장애인올림픽위원회에 대한장애인체육회 확인 <2016.5.20>)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15년 국가대표 감독선발 당시 경력서류 문제와 진정서에 의하여 법제상별위원회에 회부중인 상황 인데도 이를 묵과한 사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당시 감독 선발대상은 000, 000 2인이며, 000의 경력사항 오류(혹은 의도적 허위 기재)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선임하지 않았음. - 그러나 단순 응시자 신분의 대상자를 법제상별위에 회부한 점은 적정하지 않은 사무국 행정처리 오류사항임.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선발된 코치 경기지도자자격증 미소지 의심 - 경기지도자 자격증 위조로 인하여 입촌 후 바로 퇴촌 .당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16년도 선임된 000 감독이 '15년도 국가대표 코치로 활동한 000을 선발하였고, 당시 000 사무국장이 결격사유 없음을 확인함. - 그러나 추후 자격미달(자격증 미소지)이 확인 되어 해임함(선수촌 퇴촌조치). - 이는 사무국에서 자격사항에 대한 사전 면밀한 검토 없이 선발하는 등 직무태만으로 문제를 야기시킴. 또한 미자격자 코치에게 지급한 수당은 환수. 코치경력은 말소 처리 필요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트레이너 자격증 미소지 의심 - 트레이너는 물리치료사나 해당 트레이너 자격증 소지자로 선발해야 함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000은 트레이너가 아닌 훈련보조로 선발 하였으며, 비용도 훈련보조원 수당을 적용하여 지급하였음. - 이는 훈련원 내에서 훈련보조원이라는 호칭이 어색하여 트레이너로 사용한 점을 오해한 것으로 추측됨.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'16년 국가대표 선수선발 관련 - 선발선수 중 7명은 「2015년 국가 대표선수 선발 거부 성명서」 건과 관련, 협회 법제상별위원회에 회부 중임에도 선발함. ※성명서 발표내용과 관련, 선수들은 경북 팀 감독인 000감독의 명예 훼손으로 경찰에 고소된 상황임. - 1명은 임의탈퇴 공시요청으로 논란과 행정상의 문제(규정 무시)가 있음에도 선발함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◆성명서를 발표한 선수(9명)들이 고소되었다고 할지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당시에는 대표선수 선발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며, 아울러 상별위에서 이 건 관련하여 '경고 처분'으로서 징계를 받은 사항이 아니기에 선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. ※성명서 발표 9명 중 7명이 대표선수에 선발됨. - 임의탈퇴 공시요청에 대하여 팀과 선수 상호간 내용이 상이하야 사실확인을 하는 단계이며 현재도 진실공방 중으로서 판단을 보류함. ※ 해당선수는 국제등급분류 심사에서 등급을 받지 못해, 현재 국내 선수등록을 못하는 상황임. 	

구분	제기내용	사실 확인 및 의견	비고								
4. 협회 사무 관련	<p>○ 전 전무이사, 전 사무국장에게 압박과 비리조장을 요구하여 이에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없어 사표를 제출</p> <p>- 충남 협회장 및 임원들이 중앙협회 사업 및 운영과 사무국 직원에 대한 간섭 및 음해조장 등의 외함</p> <p>○ 현 사무국장 및 직원 채용과 관련 절차에 의한 채용여부 확인 필요</p> <p>○ 현 사무국장의 경우 협회이사→ 전문체육위원 위원→ 사무국장 임명 순으로 보직이동 경위</p>	<p>- 협회장이 전 전무이사(000)와 전 사무국장(000)에게 비리조장을 요구한 구체적 증거 등이 발견되지 않음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000 감독은 '15년 심판연수 시 참가비(10만원)를 미납했으나, 000 사무국장이 직권으로 참가등록을 시켰고 그에 따른 자격증 발급(부정발급)을 한 사실이 있음. ▪ 이에 대한 충남협회에서 이의제기를 하였고, 이와 관련 책임을 물어 인사위원회서 000 사무국장 해임을 결정함('16.2.2) <p>- 구직사이트 워크넷 및 협회 홈페이지 공고('16.2.5)를 통하여 2명이 지원, 서류심사와 면접 절차를 거쳐 채용함.</p> <p>- 000 사무국장은 전 이사 및 전문체육위원이었으며,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임용됨으로써 절차상 하자는 없음.</p> <p>※ 000 사무국장 재직현황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783 943 1329 1043"> <thead> <tr> <th>직위</th> <th>이사</th> <th>전문체육위원</th> <th>사무국장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재직기간</td> <td>'15.5.12~ '16.2.1</td> <td>'16.1.25~ '16.2.1</td> <td>'16.2.24~ 현재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직위	이사	전문체육위원	사무국장	재직기간	'15.5.12~ '16.2.1	'16.1.25~ '16.2.1	'16.2.24~ 현재	
직위	이사	전문체육위원	사무국장								
재직기간	'15.5.12~ '16.2.1	'16.1.25~ '16.2.1	'16.2.24~ 현재								
5. 협회 임원 및 이사 구성관련	<p>○ 동일대학 출신자가 20%초과 구성 할 수 없는데도 '16년 이사진 인사가 잦으면서 이를 어기고 이사를 구성</p> <p>- '16년 임사이사회 참석한 이사들의 대학학력 확인하여 동일대학 출신이 몇 %인지 확인 필요</p> <p>○ '16년 임사이사회의 이사들의 성원 및 과정, 의결사항에 대한 의구심</p> <p>※ 안건 내용, 안건에 대한 진위여부, 타당성 검증 없이 보고된 내용과 결과만 가지고 의결 한 걸로 들었음.</p> <p>○ 각 분과위원의 국가대표선발만을 위한 전문체육위원회로의 알 수 없는 보직이동 사항</p> <p>- 상별위원장은 계류 중 사건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한 채 사임하고 전문체육위원회위원으로 보직이동 하였으며 경기위원장과 위원들이 사임하고 전문체육 위원장과 위원으로 이동</p>	<p>- '15년 임원구성 당시 이미 동일대학 출신(경북대학교)이 20% 초과되어 구성되어, 정관 제24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함.</p> <p>※ 협회 제5대 임원진 구성 시 동일대학(경북대) 출신이 7명(000,000,000,000,000,000,000)으로 승인임원 26명 대비 27%로 구성됨.</p> <p>- '16.2.23 임사이사회 당시는 재적이사 21명(중전 23명에서 2명 사임) 대비 12명 참석으로 성원요건을 갖추어 안건 처리됨.</p> <p>- 관련규정에 의하면, 경기위원회, 상별위원회, 분과위원회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위촉하고 전문체육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는 바, '16.4.16자로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선임함.</p> <p>- 사무국에서는 상별위에 재심요청을 하였으나, 당시 000 상별위원장이 지체분과위원장으로 변경('16.1.25자, '16.4.16부터 현재는 지체분과위원장) 되면서 현재까지 심의 보류 중인 바, 회장이 판단하여 조속한 처리가 필요함.</p>									

구분	제기내용	사실 확인 및 의견	비고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000 경기위원장을 '16.1.25자로 전문체육 위원장에 선임하는 등, 위원회의 잦은 변경은 업무처리 지연 및 혼선의 영향이 있기에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음. 	
6.협회 선수등록 규정 개정 관련	<p>○선수등록규정 개정 시 근거와 명분 및 선수들의 합의가 있어야 함에도 아무런 공시 절차도 없이 협회 이사회 의결로 개정됨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선수 등록 및 이적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규정 개정으로 팀 구성과 선수들에게 피해를 입힐 것으로 판단 - 선수위원회 및 선수들은 어떠한 근거와 합의가 없이 이루어진 협회의 선수등록 규정 개정을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힘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선수등록 및 이적에 관한 규정은 대한장애인 체육회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협회에서 제 개정안 마련 및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며, 등록팀과 선수들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. - 다만, 민원인의 주장처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면 더 합리적 결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. <p>※개정된 규정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함</p>	
7.대한장애인체육회 관련	<p>○KPC 체육진흥부 및 훈련지원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배구 선수위원회가 배구협회에 정보공개 요청을 하였으나, 이를 거부하여 상위기관인 대한장애인 체육회에 정보공개 민원제기를 하였으나 이렇다 할 결과나 서면 통보가 없으며 민원에 대한 조차나 해결 의지가 없음. - 배구협회에 '16년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선발의 문제점을 제기 하였으나 최종승인 처리됨. -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 의구심이 들어 대한장애인배구선수위원회에 민원과 이의제기한 내용에 대하여 투명하게 조사를 요구함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민원 접수('16.2.5) 후 내용을 검토한 결과, 배구협회의 고유업무 사항으로서 서류보관 중인 바, 해당부서에서는 정보공개 요구문서를 '16.2.12자로 이관하였고(2.6~2.10 설 연휴), 협회에 결과 회신을 요구(2.19) 하였으나, 협회의 사정으로 관련자료를 제출받지 못해 민원처리 기간을 지킬 수 없었음. ※민원인에게 전화로(3회) 정보제공 지연에 따라 양해를 구하고, 4월경 임원 명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. - 각 종목의 국가대표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승인 사항이 아니라 보고사항으로서 통보 받음. ※국가대표선발규정 제4조 제1항 「장애인체육회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선수 및 지도자는 해당 기맹단체에서 선발하여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함으로써 국가대표의 자격을 갖는다.」 - 유선으로 수차례 민원인에게 설명하였으나,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책임행정의 문제로 인식됨. ※자격증 부적격 코치 퇴촌 처리 '16.3.4 보고 받음 - '16.5.12~13 배구협회 민원관련 현지 특별 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문체부에 보고 	

구분	제기내용	사실 확인 및 의견	비고
8.배구 선수위원회 요구사항	<p>○선수위원회는 배구협회에 대한 공개 행정감사를 요구함.</p> <p>○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책임자에 대한 확실한 징계를 요구함.</p> <p>○배구협회 행정감사에 있어서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통한 행정감사는 거부함.</p>	<p>-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는 배구협회에 대하여 '16.5.12~13간 '16년도 확인감사와 병행하여 민원관련 현지 특별조사를 실시함.</p> <p>- 배구협회는 ①대의원총회의 성원요건 미충족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, ②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임원 구성, ③불안정한 위원회 운영, ④지도자 선임시 자격여부 등의 철저한 사전 검증 ⑤정보공개 등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소홀 등의 사유로 ⇨ 입증한 책임을 물어 「기관 경고」 조치 필요</p> <p>- 전 사무국장(OOO)은 ①협회의 행정적 오류를 다수 유발한 주 책임자이며, ②개인 정보·협회 서류(자료) 및 정보 유출 등으로 선수위원장과 전 감독의 민원제기에 대한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③협회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기에 ⇨ 자체 상벌위 징계에 의하여 '16.25자로 해임되었으나, 「자격정지」 등의 추가 징계에 대한 협회의 검토 및 판단 필요</p> <p>- 전 국가대표 감독(OOO)은 ①'15년 심판연수 시 연수비를 내지 않고 부당하게 자격증을 취득, ②사무국으로부터 각종 자료 및 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하여 외부 유출시킴으로써 협회의 명예훼손과 업무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한 점, ③사무국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업무방해를 하였기에 ⇨ <u>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의심되므로 「자격정지」 등의 징계에 대한 협회의 검토 및 판단 필요</u></p> <p>※ OOO은 '사무국 직원 폭언·폭력'을 행사하여, '16.2.2 개최된 협회 인사위원회에서 5~10년 자격정지 의견으로 상벌위 회부를 요구하였으나, 현재까지 유보 중</p> <p>※ OOO은 실업팀 관련, 천안시청에도 수차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악성 민원인으로 분류됨. 또한 일반 대구배구협회 등 각급 기관 및 단체에 민원을 제기 중</p>	